

안산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9-445
----------	-------

제출년월일 : 2024. 5. .
제 출 자 : 안 산 시 장

□ 제안이유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공공재개발사업에서 공공임대주택 등의 건설 비율, 정비계획 입안 요청 시 주민 동의율, 용적률에 관한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 역세권의 범위, 공공임대 및 공공분양주택의 비율 등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정함
- 정비사업의 사업단계 등을 고려하여 조합의 설립인가 신청서류 중 불필요한 사업비 적정성 검토서는 삭제하여 제출 서류를 간소화하고, 기금 운영상 미비한 사항에 대하여 개정

□ 주요내용

- 공공재개발사업에서 공공임대주택 등의 건설 비율(안 제2조의2)
- 정비구역의 지정을 위한 정비계획의 입안 요청에 관한 사항(안 제7조의2, 안 별지 제1호서식, 안 별지 제1호의2서식)
- 용적률에 관한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 역세권의 범위를 정하고, 특례를 적용할 경우 사업시행자가 국민주택규모 주택을 건설하여 인수자에게 공급하여야 하는 비율 및 사업시행자로부터 공급받은 국민주택규모 주택 중 공공주택으로 분양할 수 있는 비율을 정함(안 제25조의2)
- 공공재건축사업 등의 시행자로부터 공급받은 국민주택규모 주택 중 공공주택으로 분양할 수 있는 비율을 정함(안 제25조의3)
- 정비사업의 사업단계 등을 고려하여 조합의 설립인가 신청서류 중 사업비 적정성 검토서는 삭제함(안 제18조제2항)
- 기금의 보조 신청에 관한 사항(안 제63조제1항)

- 개정조례안 : 【붙임 1】
-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2】
- 관계법령발췌서 : 【붙임 3】
- 관련사업계획서 : 해당사항 없음
- 예산수반사항 : 해당사항 없음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 【붙임 4】
- 사전예고(결과) : 의견없음
 - 입법예고 : 2024. 4. 12. ~ 2024. 5. 2. (20일간)
- 기타 참고사항
 - 현행조례 : 【붙임 5】
 - 방침결정문 : 【붙임 6】

【붙임 1】

안산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산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 및 제7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2(공공재개발사업의 공공임대주택 등 건설비율) 법 제2조제2호나 목2)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비율을 말한다.

1. 영 제1조의2제1항제1호의 경우: 100분의 40
2. 영 제1조의2제1항제2호의 경우: 100분의 30

제7조의2(정비구역의 지정을 위한 정비계획의 입안 요청 등) ① 영 제11조의2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각각 2분의 1을 말한다.

- ② 영 제11조의2제2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요청서 서식”이란 다음 각 호의 서식을 말한다.

1.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정비계획 입안 요청서
2. 별지 제1호의2서식에 따른 정비계획 입안 요청에 관한 동의서

제11조제2항제3호 중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 제2호서식”으로, “별지 제2호서식”을 “별지 제2호의2서식”으로 한다.

제18조제1항제3호는 삭제하고 “제4호”를 “제3호”로 한다.

제23조제1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한다.

제25의2를 제25조의3으로 하고, 제2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5조의2(용적률에 관한 특례) ① 영 제55조제3항제1호가목에서 “조례

로 정하는 거리”란 승강장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를 말한다.

② 영 제55조제4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과밀억제권역에서 시행하는 재건축사업: 100분의 75
2. 과밀억제권역에서 시행하는 재개발사업: 100분의 75
3.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시행하는 재건축사업: 100분의 50
4.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시행하는 재개발사업: 100분의 75

③ 영 제55조제5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20을 말한다.

제25조의3(종전의 제25조의2)의 제목 “(공공재건축사업 등의 국민주택규모 주택 건설비율)”을 “(공공재건축사업 등의 국민주택규모 주택 건설비율 등)”으로 하고, 같은 조(종전의 제25조의2)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종전의 제25조의2)에 제2항과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영 제80조의2제6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50을 말한다.

③ 영 제80조의3제3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50을 말한다.

제63조제1항 중 “융자를 받고자 하는 조합(법 제35조제3항에 따라 시장에게 인가 받은 조합은 착공신고필증 교부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를 “융자는 법 제35조제3항에 따라 시장에게 인가 받은 조합이 착공신고필증을 교부 받은 경우에 신청할 수 있다”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과 별지 제2호서식을 각각 별지 제2호서식과 별지 제2호

의2서식으로 하고, 별지 제1호서식과 별지 제1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 실·과		주택과
입 안 자	실·과장 직위·성명	주택과장 홍석효
	담당·팀장 직위·성명	재건축정비팀장 김남성
	담당자 성명·전화	김명선 (행정 2909)

[별지 제1호서식]

정비계획 입안 요청서

1.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정비계획 입안 요청 도서

가. 정비계획 입안 요청 조사

신청인	대표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		
신청내역	신청 지역	위 치			
		예정 사업명 (구역명)			
		구역면적	(m ²)		
		토지등소유자수	명		
		신청 동의자수	명	동의율	%

나. 입안 요청 사유(법령 및 조례 규정에 근거한 지정요건 및 법위 결정사유 기재)

다. 신청도면(정비구역 경계설정 도면)

1) 위치도(구역 주변의 지형지물이 표시된 축척 1/50,000이상의 도면)

2) 정비구역 결정도

(지정하고자 하는 정비구역의 범위와 도시관리계획사항 및 지형·지물이 표시된 축척 1/500
부터 1/1,500까지에 해당하는 도면<도시계획현황도>에 작성하되, 도면 작성일자 및 작성
자 직·성명 명기)

2. 정비구역 지정요건 도서

가. 구역 일반현황 총괄표

도시관리 계획사항	용도지역		용도지구		도시계획시설		기타			
					종 류	규 모	종 류	규 모		
토지 현황	구 분	계	사유지	국·공유지(관리정별)						
				소 계						
	면적 (m ²)									
건축물 현황	필지수									
	구 분	계	허가유무		용도별 허가유무별					
			유허가	무허가	주 거 용		비 주 거 용			
	동 수				소 계	유허가	무허가	소 계	유허가	무허가
	호 수									
거주자 및 권리자 현황	거주가구			거주인구			권리자(토지등소유자)			
	계	가옥주	세입자	계	가옥주	세입자	계	토지·건축 물 소유자	토지 소유자	건축물 소유자
										지 상 권 자

나. 구역지정 요건을 증명하는 내역서

(다음의 내역서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별표 1 및 「안산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5조를 적용함에 있어 해당되는 내역을 작성한다)

1) 호수밀도 현황

호수밀도 (호수/ha)	구역면적 (m ²)	건축물 호수				비 고
		계	단독주택(동)	공동주택(호)	기타건축물(동)	

2) 주택접도율 현황

주택접도율 (%)	정비구역내 건축물 총수	폭 4미터 이상 도로에 길이 4 미터 이상 접한 토지상의 건 축물 총수	비 고

3) 과소필지 등 현황

구 분	구역안의 대상 종토지		과소필지 등		과소필지 비율 (%)
	필지수	면적(m ²)	필지수	면적(m ²)	
계					
과소필지					
부정형					
세장형					

4) 재해(상습침수·재해위험)발생이 우려되는 지역으로서 사업시행 필요여부

5) 건축물의 노후·불량 등의 현황

구 분		노후·불량 비율 (노후·불량 동수 / 총 동수)	노후·불량 등의 유형 <안전진단에 의한 경우>			
			계	구 조 상 불량동수	건축설비상 불량동수	기 타
구 조 별	합 계					
	철근·철골·철골철근콘 크리트 및 강구조 기타구조(연화, 석조, 목조 등)					
준 치 기 간 별	합 계					
	10년미만 10 ~ 19년 20 ~ 29년 30 ~ 39년 40년이상					
허 가 별	합 계					
	유 허 가 무 허 가					

다. 구역지정 요건 관련 종합의견서

라. 현황전경사진

마. 관계도면

(지적·지형지물 등이 표시된 축척 1/5,000 이상의 지형도에 “나” 항의 각 내역시별 구역지정 요건을 판단할 수 있도록 작성한다.)

[별지 제1호의2서식]

정비계획의 입안 요청에 관한 동의서

동의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		
권리 내역	토지	소재지 (공유여부)	면적(m ²)	
		(계 필지)		
		()		
		()		
건축물		소재지(허가유무)	동수	
		()		
		()		
		()		

본인은 상기 권리에 대하여 「안산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7조의2제2항에 따른 정비구역의 지정을 위한 정비계획의 입안요청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동의자 (서명) 지장날인

안산시장 귀하

첨부서류 동의자 신분증명서 사본 1부

[별지 제2호서식]

정비(예정)구역 해제 신청서						처리기한 없음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	
사업 시행 구역	위치		안산시	구	동	번지일원
	정비(예정) 구역명칭				정비(예정)구역 면적	m^2 ※ 국·공유지 제외
	토지등소유자		()명		해제 검토 요청에 동 의한 토지등소유자 수 및 동의율	()명 ()%
	구역 지정일					
동의 내용	신청사유					
	토지등소유자		()명 중 ()명 동의 : 동의율 %			
	토지면적		() m^2 중 () m^2 : 동의면적비율 %			
<p>「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1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정비(예정)구역의 해제를 요청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년 월 일 대표 신청인 (서명 또는 인)</p> <p style="text-align: center;">안산시장 귀하</p>						
구비서류	1. 정비(예정)구역 해제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의 명부 1부 2. 정비(예정)구역 해제 동의서					

210mm×297mm[일반용지 60g/ m^2 ·재활용품]

[별지 제2호의2호서식]

○○정비(예정)구역 해제 동의서(재개발사업)

1. 동의자 인적사항

성명		생년월일	
주민등록상 현주소		전화번호	() -

2. 동의자 권리내역

권리 내역	토지 (총 필지)	소재지 (공유 여부)	면적(m ²)
		()	
		()	
		()	
건축물		소재지 (공유 여부)	동수
		()	
		()	
		()	
지상권		설정 토지	지상권의 내용

3. 동의내용 : 다음의 내용을 확인하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1조제1항제1호와 제2호 및 「안산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11조에 따른 ○○정비(예정)구역 해제에 동의함.

년 월 일

동의자 : (지장)

첨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의서는 자필로 서명하고 지장 날인한 후 주민등록증, 여권 등 신분증명서의 사본 첨부 * 공유지분인 경우 [별지 제4호서식] 첨부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97조에 따라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음
----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정비구역 등이 해제된 경우에는 정비계획으로 변경된 용도지역, 정비기반시설 등은 정비(예정)구역 지정 이전의 상태로 환원된 것으로 볼

[불임 2]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p>제2조의2(공공재개발사업의 공공 임대주택 등 건설비율) 법 제2 조제2호나목2)에서 “조례로 정 하는 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비율을 말한다.</p> <p>1. 영 제1조의2제1항제1호의 경우: 100분의 40</p> <p>2. 영 제1조의2제1항제2호의 경우: 100분의 30</p>
<u><신 설></u>	<p>제7조의2(정비구역의 지정을 위 한 정비계획의 입안 요청 등)</p> <p>① 영 제11조의2제2항부터 제4 항까지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 율”이란 각각 2분의 1을 말한 다.</p> <p>② 영 제11조의2제2항에서 “조 례로 정하는 요청서 서식”이란 다음 각 호의 서식을 말한다.</p> <p>1.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정 비계획 입안 요청서</p> <p>2. 별지 제1호의2서식에 따른 정비계획 입안 요청에 관한 동 의서</p>

제11조(정비계획등의 직권해제)	제11조(정비계획등의 직권해제)
① (생략)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 -----.
1. • 2. (생략)	1. • 2. (현행과 같음)
3. 정비구역(또는 정비예정구역)의 해제를 신청하려는 자는 <u>별지 제1호서식</u> 에 따른 정비구역(또는 정비예정구역)해제 신청서와 <u>별지 제2호서식</u> (재건축의 경우 <u>별지 제3호서식</u>)에 따른 해제 동의서, 공유물인 경우 <u>별지 제4호서식</u> 에 따른 공유자 위임장, <u>별지 제5호서식</u> 에 따른 동의자명부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 ----- --- <u>별지 제2호서식</u> ----- ----- ----- <u>별지 제2호의</u> <u>2서식</u> ----- ----- ----- ----- ----- ----- ----- ----- -----. -----.
4. • 5. (생략)	4. • 5. (현행과 같음)
③ (생략)	③ (현행과 같음)
제18조(조합의 설립인가 신청서류 등의 작성방법) ① (생략)	제18조(조합의 설립인가 신청서류 등의 작성방법) ① (현행과 같음)
1. • 2. (생략)	1. • 2. (현행과 같음)
3. <u>사업비 적정성 검토서</u>	<사 제>
4. <u>개략적인 추가부담금 산출 서 및 통지 내역 증명서류</u>	3. ----- -----

② · ③ (생 략)

제23조(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

① (생 략)

<신 설>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23조(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

(현행 제1항과 같음)

제25조의2(용적률에 관한 특례)

① 영 제55조제3항제1호가목에
서 “조례로 정하는 거리”란 승
강장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
를 말한다.

② 영 제55조제4항에서 “조례
로 정하는 비율”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과밀억제권역에서 시행하는
재건축사업: 100분의 75

2. 과밀억제권역에서 시행하는
재개발사업: 100분의 75

3.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
서 시행하는 재건축사업: 100
분의 50

4.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
서 시행하는 재개발사업: 100
분의 75

③ 영 제55조제5항에서 “조례
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20을 말한다.

제25조의2(공공재건축사업 등의
국민주택규모 주택 건설비율)
(생 략)

제25조의3(공공재건축사업 등의
국민주택규모 주택 건설비율
등)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

과 같음)

<신 설>

② 영 제80조의2제6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50을 말한다.

<신 설>

③ 영 제80조의3제3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50을 말한다.

제63조(기금의 보조·융자의 신청) ① 제58조제2호에 따른 기금의 보조 및 융자를 받고자 하는 조합(법 제35조제3항에 따라 시장에게 인가 받은 조합)은 착공신고필증 교부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② (생략)

제63조(기금의 보조·융자의 신청) ① -----
----- 융자는 법 제35조제3항에 따라 시장에게 인가 받은 조합이 착공신고필증을 교부 받은 경우에 신청할 수 있다.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별지 제1호서식]

장비계획 입안 요청서

1. 장비구역 지정을 위한 장비계획 입안 요청 도시

가. 장비계획 입안 요청 조사

설명	내용	행정부서	설명		행정부서
			주소	(전화:)	
신정대역	신정 지역		위치		
			행정 사업명 (부여명)		
			구역면적		(m ²)
			도시등 소유자수		명
			신정동의 자수	명	동의율 %

나. 입간 요청 사유(법령 및 조례 규정에 근거한 지정요건 및 면위 결정 사유 기재)

다. 신정도면(장비구역 경계선정 도면)

1) 위치도(구역 주변의 지형지물이 표시된 축척 1/50,000이상의 도면)

2) 장비구역 결정도

(지정하고자 하는 장비구역의 면위와 도시관리계획사업 및 지방-시물이 표시된 축척 1/1,500부터 1/1,500까지 해당하는 도면<도시계획 인화도>에 작성하여, 도면 작성일자 및 작성자 작성명 명기)

2. 장비구역 지정요건 도시

가. 구역 입면연획 종류표

도시관리 계획사업	종도지역	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		기타	
			종	규	종	규
주용유지(관리경界)						
도	구	분	개	사유	제	비고
지	면	적	면	적	면	
역	면	적	면	적	면	
면	면	적	면	적	면	
면	면	적	면	적	면	
여객유동						
도	구	분	개	유	통	비고
지	면	적	면	유	통	
역	면	적	면	유	통	
면	면	적	면	유	통	
면	면	적	면	유	통	
면	면	적	면	유	통	
인구유동						
도	구	분	개	유	통	비고
지	면	적	면	유	통	
역	면	적	면	유	통	
면	면	적	면	유	통	
면	면	적	면	유	통	
면	면	적	면	유	통	
면	면	적	면	유	통	
기초인구						
기	구	주	개	인	구	비고
수	면	인	면	구	인	
자	면	인	면	구	인	
인	면	인	면	구	인	
구	면	인	면	구	인	
자	면	인	면	구	인	
인	면	인	면	구	인	
기초인구						
기	구	주	개	인	구	비고
수	면	인	면	구	인	
자	면	인	면	구	인	
인	면	인	면	구	인	
구	면	인	면	구	인	
자	면	인	면	구	인	
인	면	인	면	구	인	

다. 구역지정 요건을 증명하는 대역사

(다음의 대역사 중 「도시 및 주거환경설비법 시행령」 별표 1 및 「임산자 도시 및 주거환경설비 조례」 제5조를 적용함에 있어 해당 되는 대역을 작성한다)

1) 호수밀도 현황

호수밀도	구역면적 (ha)	건축물 호수			비고
		개	단독주택(동)	공동주택(호)	

2) 주택밀도율 현황

주택밀도율 (%)	장비구역내 건축물 총수	총 4미터 이상 도로에 접이 4미터 이 상 접한 도로상의 건축물 총수		비고
		개	동	

3) 폐소원지 등 현황				
구 분	군역관의 대상 종도지		폐소원지 등	
	원지수	면적(m ²)	원지수	면적(m ²)
계				
폐소원지				
무정령				
세장령				

4) 재해(상습침수·재해위험)발생이 우려되는 지역으로서 사업시행 필요 여부

5) 건축물과 노후·불량 등 현황

구 분	노후·불량 비율 (노후·불량 등수 / 총 등수)		노후·불량 등의 유형 <안전진단에 의한 경우>		
	구	조	상	불량등수	기타
합 계					
구조면	설득면적률	설득면적률	설득면적률		
종	10년미만	10~15년	15~20년		
치	10 ~ 15년				
기	20 ~ 25년				
간	30 ~ 35년				
변	10년이상				
합 계					
하	합 계				
가	유	하	가		
별	부	하	기		

다. 구역 지정 요건 관련 종합 의견서

라. 연평선 감사 신

마. 관계도면

(지적·지형지물 등이 표지원 측적 1/5,000 이상의 지정도에 *나* 항의
가 대역지면 구역 지정 요건을 판단할 수 있도록 작성한다.)

<신 설>

[별지 제1호의2식]

장비계획의 입안 요청에 관한 동의서

동의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	
권리 대역	노 지	소 재 지(공유여부)	면 적(m ²)
		(계 평지)	
		()	
		()	
	건축물	소 재 지(허가유무)	등 수
		()	
		()	
		()	

본인은 상기 권리에 대하여 「안산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 7조의2제2항에 따른 장비구역의 지정을 위한 장비계획의 입안요청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동의자 (성명) 지 장년인

안산시 장·귀하

첨부자료 | 동의자 신분증명서 사본 1부

[별지 제1호서식]

신청인	정미(예정)구역 해제 신청서			처리기한 없음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				
사업 시행 구역	위치	안산시	구	동	면지역원
	정미(예정) 구역명칭		정미(예정) 구역면적	III ※ 국공유 지 제외	
	토지등소유자	()명	해제 감도 요 정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 수 및 동의율	()명	()%
	구역 지정일				
동의 내용	신정사유				
	토지등소유자	()명	증 ()명	동의한 토지등소유자 수 및 동의율	%
	토지면적	()m ²	증 ()m ²	동의면적비율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1조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 라					
○○정미(예정)구역의 해제를 요청합니다.					
년 월 일 대표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안산시장 귀하					
구비서류	1. 정미(예정)구역 해제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의 명부 1부 2. 정미(예정)구역 해제 동의서				

[별지 제2호서식]

신청인	정미(예정)구역 해제 신청서			처리기한 없음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				
사업 시행 구역	위치	안산시	구	동	면지역원
	정미(예정) 구역명칭		정미(예정) 구역면적	III ※ 국공유 지 제외	
	토지등소유자	()명	해제 감도 요 정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 수 및 동의율	()명	()%
	구역 지정일				
동의 내용	신정사유				
	토지등소유자	()명	증 ()명	동의한 토지등소유자 수 및 동의율	%
	토지면적	()m ²	증 ()m ²	동의면적비율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1조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 라					
○○정미(예정)구역의 해제를 요청합니다.					
년 월 일 대표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안산시장 귀하					
구비서류	1. 정미(예정)구역 해제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의 명부 1부 2. 정미(예정)구역 해제 동의서				

[별지 제2호서식]

○○정미(예정)구역 해제 동의서(제개발사업)																	
1. 동의자 인적사항																	
<table border="1"> <tr> <td>성명</td> <td></td> <td>생년월일</td> <td></td> <td colspan="2"></td> </tr> <tr> <td>주민등록상 현주소</td> <td></td> <td>전화번호</td> <td>() -</td> <td colspan="2"></td> </tr> </table>						성명		생년월일				주민등록상 현주소		전화번호	() -		
성명		생년월일															
주민등록상 현주소		전화번호	() -														
2. 동의자 권리내역																	
권리 내역	토지 (종 편지)	소재지 (공유 여부)	면적(m ²)														
		()															
		()															
	건축물	소재지 (공유 여부)	동 수														
		()															
		()															
	지상권	소재지 (공유 여부)	동 수														
		()															
		()															
		선정토지	지상권의 내용														
3. 동의내용 : 다음의 내용을 확인하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1 조제1항제1호와 제2호 및 「안산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 례」 제11조에 따른 ○○정미(예정)구역 해제에 동의함. 년 월 일																	
동의자 : (자장)																	
점부	※ 동의서는 자필로 서명하고 지장 날인한 후 주민등록증, 어린이 등 신분증명 서의 서명 필수 ※ 공유지분인 경우 [별지 제1호서식] 점부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고유식별정보를 차리 할 수 있음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정미구역 등이 해제된 경우에는 정미계획으로 변경된 용도지역, 정미기반시설 등을 정미(예정) 구역 지정 이전의 상태로 환원된 것으로 볼																	

[별지 제2호서식]

○○정미(예정)구역 해제 동의서(제개발사업)																	
1. 동의자 인적사항																	
<table border="1"> <tr> <td>성명</td> <td></td> <td>생년월일</td> <td></td> <td colspan="2"></td> </tr> <tr> <td>주민등록상 현주소</td> <td></td> <td>전화번호</td> <td>() -</td> <td colspan="2"></td> </tr> </table>						성명		생년월일				주민등록상 현주소		전화번호	() -		
성명		생년월일															
주민등록상 현주소		전화번호	() -														
2. 동의자 권리내역																	
권리 내역	토지 (종 편지)	소재지 (공유 여부)	면적(m ²)														
		()															
		()															
	건축물	소재지 (공유 여부)	동 수														
		()															
		()															
	지상권	소재지 (공유 여부)	동 수														
		()															
		()															
		선정토지	지상권의 내용														
3. 동의내용 : 다음의 내용을 확인하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1 조제1항제1호와 제2호 및 「안산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 례」 제11조에 따른 ○○정미(예정)구역 해제에 동의함. 년 월 일																	
동의자 : (자장)																	
점부	※ 동의서는 자필로 서명하고 지장 날인한 후 주민등록증, 어린이 등 신분증명 서의 서명 필수 ※ 공유지분인 경우 [별지 제1호서식] 점부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고유식별정보를 차리 할 수 있음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정미구역 등이 해제된 경우에는 정미계획으로 변경된 용도지역, 정미기반시설 등을 정미(예정) 구역 지정 이전의 상태로 환원된 것으로 볼																	

안산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 안 번 호	9-445
------------	-------

제안년월일 : 2024년 6월 10일

제 안 자 : 도시환경위원장

□ 수정이유

- 조례 입안의 명확성 및 간결성의 원칙에 따라 성장관리권역인 우리시는 해당이 없는 과밀억제권역에 관한 내용을 삭제하기 위하여 수정함.

□ 주요골자

- 과밀억제권역에서 시행하는 공공재개발사업 시 조례로 정하는 공공임대주택의 건설비율에 관한 내용 삭제(안 제2조의2)
- 과밀억제권역에서 역세권 내 정비사업 시행 시 조례로 정하는 용적률 완화 비율에 관한 내용 삭제(안 제25조의2제2항)

안산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안산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2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 호의 비율을**” 을 “**100분의 30을**”로 하고, 같은 조 각 호를 각각 삭제한다.

안 제25조의2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호와 같다**” 를 “**각각 100분의 50 및 100분의 75를 말한다**”로 하고, 같은 항 각 호를 각각 삭제한다.

수정안 조문 대비표

□ 안산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u><신 설></u>	<p>제2조의2(공공재개발사업의 공공임대주택 등 건설비율) 법 제2조제2호나목2)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u>다음 각 호의 비율</u>을 말한다.</p> <p>1. 영 제1조의2제1항제1호의 경우: 100분의 40</p> <p>2. 영 제1조의2제1항제2호의 경우: 100분의 30</p>	<p>제2조의2(공공재개발사업의 공공임대주택 등 건설비율) -----</p> <p>-----</p> <p>--- 100분의 30을-----</p> <p>--.</p> <p><u><삭 제></u></p>
<u><신 설></u>	<p>제25조의2(용적률에 관한 특례) ① (생략)</p> <p>② 영 제55조제4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u>다음 각 호와 같다.</u></p> <p>1. 과밀억제권역에서 시행하는 재건축사업: 100분의 75</p> <p>2. 과밀억제권역에서 시행하는 재개발사업: 100분의 75</p>	<p>제25조의2(용적률에 관한 특례) ① (개정안과 같음)</p> <p>② -----</p> <p>- 각각 100분의 50 및 100분의 75를 말한다.</p> <p><u><삭 제></u></p> <p><u><삭 제></u></p>

3.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

에서 시행하는 재건축

사업: 100분의 50

<삭 제>

4.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

에서 시행하는 재개발

사업: 100분의 75

<삭 제>

③ (생략)

③ (개정안과 같음)